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10. 19 선고 2020나22208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10. 19 선고 2020나222086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12. 10 선고 2020가소5659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1. 9. 28.

판결선고 2021. 10. 19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가소5659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,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황현찬, 판사 이효두, 판사 박이규